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26.4.24.)에 따른 법령 준수 및 이행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규제 관리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개정안이 '26년 4월 24일(금)부터 시행되오니 변경되는 내용을 숙지하시어 정책 수행 및 사업 운영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및 변동사항

- (담배정의)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까지 확대
- (판매규제) 온라인 판매, 자동판매기 및 청소년 판매 금지 등 권련과 동일 규제
- (금연구역) 금연구역 내 모든 전자담배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경고그림) 합성니코틴 담뱃갑 포장지 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나. 협조사항

- 확대된 「국민건강증진법」 담배 규제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니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에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아울러, 개정 법령과 관련된 **참고 자료는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www.nosmokeguide.go.kr) → 정보자료 → 금연자료실

붙임 1. (붙임1) 담배정의 확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관련 Q&A
2. (붙임2) 담배규제 관련 카드뉴스 2종. 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수신자 대한보건협회, 대한금연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대한폐암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한국정책학회, 한국보건복지학회,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한국환경보건학회,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산업보건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전국지역금연지원센터, 통합건강증진사업단,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전국교육지원청, 질병관리청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국립방향의동산관리원장,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하대학교총장, 한국보건대학원협의회

주임전문원	신승원	금연정책기획 부장	김지은	금연정책실장	출장	건강위해예 방본부장	전결 04/14
-------	-----	--------------	-----	--------	----	---------------	----------

협조자

시행 금연정책기획부-234 (2026.04.14.) 접수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00(중곡동) 보건복지 / http://www.khepi.or.kr
우 04933 행정타운 8층-10층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전화 02-3781-2205 전송 / seungwon@khepi.or.kr / 공개